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040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1.

발의자 : 황주홍 · 이찬열 · 백재현
정인화 · 김관영 · 유성엽
윤영일 · 윤소하 · 전혜숙
박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민법」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, 「민법」이 개정(법률 제10429호, 2011. 3. 7. 공포, 2013. 7. 1. 시행)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.

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(안 제11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금치산자”를 “피성년후견인”으로, “한정치산자”를 “피한정후견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미성년자·<u>금치산자</u> 또는 <u>한정치산자</u></p> <p>3. ~ 5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<u>피성년후견인</u>----- -<u>피한정후견인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